

제391회국회
(정기회)**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1년11월23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15)
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390)
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196)
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02)
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06)
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98)
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11)
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63)
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282)
1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53)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14)
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49)
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11)
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00)
1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23)
1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699)
1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65)
1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861)
19.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66)
20.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99)
21.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04)
22.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37)
23.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213)
24.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517)
25.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45)
26.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87)

상정된 안건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5) 2
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3390)	2
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6)	7
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2)	7
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06)	10
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98)	10
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1)	10
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8363)	10
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82)	15
1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53)	15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14)	21
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49)	21
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11)	21
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0)	21
1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23)	25
1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699)	25
1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65)	28
1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61)	28

(09시33분 개의)

○소위원장 박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법안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법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법안 심사는 소위 심사자료 순에 따라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전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행정안전부를 대표하여 고규창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법안1소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법안들이 심사가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더 완성도 높은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출석했습니다.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오늘 저희 제주의 염원이고 숙원이던 이 법안을 이렇게 심사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고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고맙습니다.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5)

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0)

(09시37분)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먼저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오영훈 의원님과 이명수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어제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과 합의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어제 보셨던 법안 심사 자료의 설명 부분 중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저희가 추려 놓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항에서 설명은 어제 드렸던 것으로 같음할 수 있기 때문에 목차만 잠깐 보시겠습니다.

3쪽은 먼저 보상금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영훈 의원안은 희생자 유형별로 9000만 원부터 해서 유족에게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이명수 의원안은 희생자에게 8000만 원, 배우자는 4000만 원, 자녀는 800만 원, 형제는 400만 원 이렇게 정액으로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논의를 하셨던 부분이 완료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자료에 넣어 놔습니다.

일단 목차만으로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입니다.

보상 청구권자의 범위 및 순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민법상의 상속순위에 따라서 유족의 청구권이 결정되는 것으로 하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동순위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칙을 둔 부분입니다.

다음 12쪽은 보상금의 신청 부분입니다.

보상금의 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접수를 하고 사실조사를 한 후에 위원회가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그 결정서가 송부되면 지급 청구를 하고 지급은 그 지급 결정이 난 후 30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다른 입법례에서는 보상금 신청기간을 법에 명시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또는 관련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후 6개월 이내라고 해서 신청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과 이 법에서는 신청기간 등을 완전히 대령으로 위임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다음 목차로 라면, 17쪽입니다.

지연이자 부분입니다.

개정안, 오영훈 의원안에서는 위원회의 보상금 신청 순서에 따른 후순위 신청의 경우와 보상금 등 지급 청구 후 기한 내에 지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지연이자를 두 가지의 경우에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히 첫 번째 후순위 신청자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줄 것인가 그리고 지급대상의 기준 그리고 지연이자 가산기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서 자료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후순위 신청자에 대한 지연이자 부분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20쪽입니다.

혼인신고 등의 특례 부분입니다.

오영훈 의원안 21조의2에서는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기존 사실혼 관계에 기초하여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혼인신고된 희생자와 배우자의 혼인관계를 인정하고 희생자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출생신고된 사람에 대해서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희생자와 자녀의 친자 관계를 소급하여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확인이 조금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셔서 자료에 담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쟁점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외에 어제 논의하셨던 부분과 정부측과 합의된 조문 정리 등을 반영한 내용은 이렇게 조문 형태의 황으로 된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먼저 3페이지 가, 보상금 기준에 대해서는 오영훈 의원님 안으로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상 청구권자의 범위 및 순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12페이지 보상금의 신청 등에 관해서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에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민주화 보상법 같은 경우는 희생자분들이 수도 적고 그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서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법에 명료하게 해서 정리할 수 있겠으나 이 4·3 같은 경우는 희생자 수가 워낙 많고 또 추가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이것을 법률에다 명시해 놓으면 매번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대

령에다가 3년의 범위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4·3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셔서 대령으로 근거를 두시면 저희가 더 융통성 있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서 수정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자연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례나 재정 당국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자연이자의 이율도 시중은행의 이자 1.5% 선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은 이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상정적인 의미가 있고 희생자분들에 대한 어떤 금액보다는 심정적인 위로의 상징으로 보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는 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혼인신고 등의 특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자연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입장은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저희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이형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연이자의 개념보다는 후순위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행안부는 수용한다는 입장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저도 한번 물어보면, 이게 5년 동안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른 위원님들……

이명수 위원님.

○이명수 위원 2조(정의)에서 보상금이란 제주 4·3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돼 있는데 손해가 적절한 표현인지, 예를 들면 피해라든지 지금 16조에 나오는 보상금 그것과 연계된 용어로 바뀌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저희가 이 법률안이 보상금으로 주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금, 돈으로 환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보다는 손해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더 명확하게 금전적 용어로 정리하고요. 행정학이나 행정법상에서도 손해전보라고 하는 공식적인 용어들이 있기 때문

에 손해가……

○이명수 위원 손해로 하면 전보가 맞는데 손해라는 표현이 적절한 건가, 좀 더 포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서, 의견은 그렇고……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게 하면, 보상금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피해라고 그러면 너무 광범위해서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손해전보의 개념을 썼고요. 용역이나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런데 2조의 보상금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16조의 보상금을 보면 국가는 희생자의 일실효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아야 되거든요. 앞에 보상금 정의에 나오는 용어하고 뒤에 16조에 나오는 보상금하고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그게 적절합니까? 보세요, 개정안의 16조(보상금).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저희가 2조에 나와 있는 보상금 정의의 내용을 16조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고요. 어느 부분에서……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16조에 풀어서 한 것이 2조(정의)하고 맞냐 그 얘기예요. 위자료 같은 것도 손해라고 그러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자료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입으신 피해에 대한 부분을 위자료라고 표현을 하고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보상으로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이명수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이것 적절합니까, 2조(정의)하고 16조(보상금)에 풀어 쓴 것하고?

○소위원장 박재호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예.

○이명수 위원 문제가 없어요? 2조에 정의를 내린 것하고…… 정의가 중요하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런데 그 정의를 쏘아 16조거든요. 그게 적절하냐고요, 지금?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손해가 과연 16조에 있는 일실효익,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해당하는 그것과 맞느냐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명수 위원 예,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그런데 그 손해라는 개념이 16조와 딱 맞지는 않지만 사실 16조의 부분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감안할 때 피해로 본다면 피해에 대한 전보라는 개념은 성

립하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의 부분의 정신적 고통 부분을 제외하고 앞에 일실이익이나 보상 지연 등을 감안하면 손해로 보시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부분은 손해 플러스 위자료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수 위원 하여튼 명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딱 대안을…… 하여튼 앞의 정의 부분하고 뒤에 보상금 풀어쓴 것하고 이게 딱 맞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들고요.

거듭 얘기합니다만 처리와는 별개로 배·보상 문제, 어제 얘기했던 보상기준 문제 관련해서 개별 소송에 의한 보상금 지급하는 것하고 입법을 통한 정책적 보상이 같을 수는 없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유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입법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다른 민주화운동에서 유족들이 추후에 개별적으로 소송을 내서 지급되거나 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개별 사건에 대해서 소송으로 보상·배상받으신 사례들은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얼마나 되나요? 많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것은 공식적으로 정부가 입법정책적으로 하는 것과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러면 유족들은 소송을 통해서 별도로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더라도 입법은 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입법례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습니다. 입법으로 확립적으로 할 수는 없다.

○이명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거듭 주장합니다만 유족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유족들의 아픔·고통은 결국 희생자가 다 연관된 거거든요. 희생자와 연관이 안 된 유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라리 입법으로 해 주면 안 좋겠냐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거고.

하여튼 저는 통과와 관계 없이 소수 의견으로 계속 이 얘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속기록에 잘 남겨 놓으시고.

말씀하십시오,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밤새 이것 꼼꼼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쾌해진 것 같습니다.

차관께 여쭙보겠습니다.

이게 보상 집행을 제때 하면 자연이자가 발생될 여지는 없지요,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신청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김형동 위원 기산점이 언제부터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청 접수 시점으로……

○김형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 말씀에 연이어서 어제도 잠깐 확인을 했고 또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4·3 사건 희생자·유족자를 다 보호하고 위로하고 현재 재단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맞습니다.

○김형동 위원 유족이 몇 분 되시는지 여기 통계가 나와 있네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유족을 정확하게 기준에 따라서 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로는 한 8만여 분 되는 것으로……

○김형동 위원 8만 452명이고요, 희생자는 1만 4533명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형동 위원 그러면 이 법은 1만 사천오백서른세 분에 대한 적용 법이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맞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러면 나머지 8만여 넘는 분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 법에서, 사망과 행불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로 인해서 보상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들에게 상속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김형동 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유족 본인이 받은 고통에 대해서는 이 법이 케어하는 것은 아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아닙니다.

○김형동 위원 변외입니다만 그러면 유족 8만여 분에 대한 보호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트라우마센터도 운영을 하고요. 또 제주에서 하는 재단을 통해서 위로와 위령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어제……

○김형동 위원 아직 더 남았는데요.

○소위원장 박재호 더 남았어요? 김형동 위원님 더 이야기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어제 회의하시는 과정에서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간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20쪽에 혼인신고 등의 특례조항입니다. 그 부분의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들으시는 게,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설명을 말씀으로 드리기는 조금 복잡하지만 첫 번째 부분은 혼인신고가 무효화될 가능성 때문에 들어간 조항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들었고, 22쪽 조문대비표 21조의2를 보시면 희생자의 사실상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기존 사실혼 관계에 기초하여 이 법 시행일에 의해서 희생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수리된 희생자에 대한 혼인신고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사실상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결정 이전에 희생자의 친자로 출생신고된 사람에 대해서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의견을 잠깐 보시면 첫 번째 혼인신고 부분이 약간 규정이 모호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부분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할 때 보통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에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희생자의 친자로 출생신고된 사람에 대하여는’이라고 해서 출생신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전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의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이 법 21조의2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데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행안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게 법리적으로 실제 쟁송에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면밀하게 따져볼 개연성은 있는데요. 지금까지 7차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져 있고 희생자들 개개인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거의 특정화가 돼 있고 증거와 정황들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개개의 사건이라고 그러면 다툼의 여지가 많을 수가 있겠는데 이 사건이 그때 그 기간과 상황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그 사실관계들은 정황과 증거를 통해서 조사단에서 7차에 걸쳐서 계속 검증

과 검증을 해서 거의 확정된 단계에 있는 부분을 법리적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지방행정정책관 최병관 지방행정정책관입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제가 예시를 하나 드는 게 편할 것 같아 가지고요, 예를 들면 4·3 사건 당시에 행방불명된 자가 있습니다, 사망하신 분 말고요. 행방불명되신 분과 사실혼 관계를 기초로 해서 55년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치면, 그런데 행방불명된 사람이 실종신고돼 가지고 70년에 실종신고 선고를 받게 되면 실종신고라는 게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사망일이 예를 들면 54년으로 확인됐다고 그러면 55년도에 혼인신고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혼인신고 특례 규정을 두게 된 것이고요.

이것은 제주3·4 사건 업무처리 매뉴얼에도 이렇게 소급효가 됨으로써 혼인신고가 무효화되는 것을 대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돼 있고 용역보고서랄지 판례에서도 이런 혼인신고가 소급효가 돼서 무효화된 것들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례 규정을 뒀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어제 2건이 나왔는데 시간이 짧아서 그냥 지나갔는데, 그래도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법이나 기존에 혼인관계의 특례를 정한 법률에도 또 예외가 되니까 이게 그럴 요건이나 취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데, 하루 지났습시다마는 클리어해졌다고 봐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어색하기는 합니까마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그게 제주4·3 사건이……

○김형동 위원 아니,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법무부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명쾌하게 집행하는 데 다른 법률하고 트러블이 없고 혼인관계 제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운영이 가능하냐고 여쭙보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저도 이 내용을 들으면서 혹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진상조사는 다 되었고

대다수 다 했지만 이런 것에서 또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 소송을 걸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법무부하고 이야기가 된 상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법무부하고 협의했고요.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의 여지 때문에 소송의 길은 항상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가외적인 여러 장치들을 해 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또 의견 있습니까? 이야기하십시오.

○**김형동 위원** 아까 예를 들어 주셨는데 제 지인 중에도 이 4·3 관련해서 손자나 자녀분들이 오픈하지 못하고 외국에 가서 사시는 분도 계세요, 들어오지도 않고. 특히 일본에도 꽤 많이 사시는 것 같은데, 사실혼이 있었다라고 간주해 주거나 아니면 사실혼 관계 또는 적법하게 혼인신고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출생자가 있었는데 이후에 또 결혼해서 자녀가 생겼다 이런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아까 용역보고서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만드는 법률에 따르면 잘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형동 위원** 케이스를 다 연구해 보셨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지금 1만여 분에 관한 것들은 건건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리가 완성 단계에 있는 분들부터 신청하시도록 했고 아직 좀 더 조사나 확증이 필요한 부분들은 후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조사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건수 자체가 아주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소송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충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대응이 아니고 그쪽으로 넘기는 것이겠지요. 추후에 친자가 확인되거나 혼인 관계가 확인되면 알아서 그냥 법원에 가서 해결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법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요.

○**김형동 위원** 그것은 길이 아니지요.

○**소위원장 박재호** 여기 밖에 유족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게 참 오래된 일이고 처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앞으로 국가 예산을 좀 더 배정을 받으면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의 선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도 새로운 역사를 하나 만들어 내는 과정입니다, 물론 소위에서

의 통과지만.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어제 충분히 의논을 했고 오늘 또 정리된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6)

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2)

(10시03분)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3항과 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3항과 4항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으로서 두 안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책이 2권이 되겠습니다.

먼저 3항 윤관석 의원 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인천5·3민주항쟁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천5·3민주항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 의결한 사례가 있는 사건으로 이미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민주화운동의 정의는 각주 1번을 보시면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등등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해서 2조에 의한 정의가 법률에 열거한 것이 한정적이지 아니라 예시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라서 이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여기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의 예시들이 들어져 있는데 꼭 이 사건만 법에 명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영 위원 차관님, 4·19 혁명이나 부마항쟁 여기처럼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서 민주화운동으로 결정 나면 명예회복이랑 보상은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적용받습니다. 5·3의 경우에도 83건이 신청이 됐고요, 민주화보상위 심의 결과로 그중에 74건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영 위원 그러면 보상의 문제는 아니고 이게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의견 없습니까?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 어차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 보상되고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법률에 인천 5·3 민주항쟁만이 아니라 또 다른 민주화운동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을 넣는 것에 그렇게 인색하게 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뭐…… 선언적인 의미를 담는 것인데요.

○이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몇 건이나 되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 제2조에 열거된 민주화운동은 각각의 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민주화운동만 지금 법에 열거되어져 있고요. 아직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안 된 부분들은 시행령에 담어져 있는데 이 사건만 이렇게 법에 넣으면 다른 많은 민주화운동에 관한 건들이 또 요구될 수 있어서 논의를 좀 더 해보고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면 정의 규정에 있는 2·28 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 부마항쟁, 6·10항쟁 이게 다 국가기념일로 되어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국가기념일입니다.

○이영 위원 그러면 국가기념일 아닌 건 총 몇 개입니까? 민주화운동으로 결정은 됐지만 국가기

념일이 아닌 건 총 몇 개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저희가 카운팅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관련자는 한 1만여 명 가까이 되고 사건은 정치 반독재운동 또 사상·이념 단체 결성 활동, 언론민주화, 교육민주화,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사건 등등 기타까지 해서 이것 전체가…… 우리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들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 위원 얼추 들어도 10개 넘네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10개는 훨씬 넘고요.

○이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형석 위원 민주화운동에 대한 의의나 이런 것들을 법에 명시하는 것 자체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인천5·3민주항쟁도, 여기 법에 정의된 것은 기념일로 지정된 민주화운동을 넣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민주화운동을 다 정의에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명시하는 것보다 그런 쪽에서 포괄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것은 보니까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은 논의를 계속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백혜련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요청할게요.

2·28대구민주화운동하고 3·8대전민주의거 같은 경우하고 인천5·3민주항쟁하고 참가 인원과 규모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4·19혁명이나 부마항쟁, 6·10항쟁 이런 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저희가 다 잘 아는데 앞의 2개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인천5·3민주항쟁이 더 크고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던 운동이라면 사실 고려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참고자료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의견을 거의 비슷하게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소감 내지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소위원장 박재호 김형동 위원님, 마스크 좀 바꿔 주세요.

○김민철 위원 마스크가 그것밖에 없나 봐.

○김형동 위원 아침에 우리 회의할 때 쓰는 건데 남는 것 있습니까,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 갖다 드리세요.

○김형동 위원 그래도 발언 시간이 가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행안위 소관이어서, 일반적으로 국회 소관이고 또 개별 입법 제안으로 정해질 문제겠지만 곳곳의 지역마다, 특히 민주화운동도 그렇고 해방 전후의 문제도 그렇고 또 해방 이전의, 광복 이전의 문제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피해 보는 분 없이 살살이 조사됐으면 좋겠고 형평성을 갖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법률도 일단 포괄적으로, 원칙적으로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논의가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이 안은 조금 전의 자료 요청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 위원 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하고 싶은데요.

질의드렸을 때 차관님도 너무 많아서 몇 개나 있는지 바로 모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한 건을 가지고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것과 단순히 비교해서 넣을 수 있다 아니라는 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행안부 차원에서 다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으니까 이번 참에 기준을 다시 볼 건지 말 건지를 해서 제안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올라온 법안을 기존에 있는 거랑 비교하면 또 2차·3차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소위원장 박재호 그렇게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 위원 그래서 저는 행안부가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되는 문제로 생각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어려운 기준이긴 한데 저희도 객관적인 기준들은 비교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차관님께서 행안부의 민주화 관련됐던 모든 조항을 다 해 가지고 그것이 역사에 미친 영향이 어땠는지 또 참가 인원, 그때 당

시의 언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종합·분석해서 이것을 전부 다 열거할 것인지, 그래서 기념일을 다 만들어 줄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구별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면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형석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의견도 같이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수석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윤재옥 의원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외에 제2조에 규정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법인도 경비를 보조받거나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제명 그대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외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안부장관 등이 승인한 법인도 경비를 보조받거나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라는 법인 설립을 위해 제정된 법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외에 기타의 법인을 보조금 지원이나 국·공유재산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목적과 체계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의 제2조에 규정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안부장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법인은 범위가 매우 포괄적인바 이러한 대상에 대하여 보조금 대상 사업을 특정하지 않고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되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전문위원님의 신중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영 위원님.

○이영 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법인 설립 전에 생겼던 법인들이 있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법인들의 시차적인 선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으로 특정되어 있는데 기타의 법인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여기 두는 것은 일단 법체계상 맞지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비영리단체, 공익단체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은 가능하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 위원 차관님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해를 했는데 왜 질문을 드렸냐면 앞으로 생길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런 법인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통일하자라든가 아니면 이 법 외의 다른 법, 지금 말씀하신 적용 가능한 시행령이나 거기에 저촉되는지를 확인해라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 이전에 생긴 것들은 사업회 법인 설립하면서 흡수나 통폐합이나 아니면 교통정리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 과정들이 지난하게 있었고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규정과 시행령에 나와 있는 단체들은 정리가 됐었고요. 기타 유사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서 관련되는 지원들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꼭 이 사안을 여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넣을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1)

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8363)

(10시17분)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8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안별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은 정부안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사항으로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와 의결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청구받은 경우 청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의결을 완료하되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6개월 이내에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6개월 이내에 의결하도록 하는 것을 90일 이내로 그리고 연장기간 또한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려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4쪽입니다.

임오경 의원안, 이영 의원안, 양정숙 의원안 공히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17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06)

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98)

개정안들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주민등록증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또는 위·변조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정도로 보급률이 높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분 확인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하기 위한 위·변조 방지 등 보안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시스템의 운영이 안정적이어야 하는 등 기술적·물리적 환경 구축을 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은 지문 등 생체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정부에서 현재 추진 예정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분확인 환경을 조성하고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의 모바일 전환에 따른 보안성·안정성 등을 검토한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전문위원의 신중 검토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이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 위원 저도 이유를 들었을 때 정부안을 수용하는데요.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지금 보안적인 면이 우선이 돼서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거지요, 주민등록 확인서비스? 이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하고 이후에 준비가 됐을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고민을 해 보자라는 게 취지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영 위원 그러니까 가지 않겠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당연합니다.

○이영 위원 그렇지요, 순서가 좀 바뀐 부분이 고.

그런데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되는데, 두 가지가 고민인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행하기 전에 통

신사한테도 같은 서비스 권한을 줘 가지고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지금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 확인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시행하게 했다고요.

그런데 시장 점유율이 지금 굉장히 높아 가지고 본 사업을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국민들이 느끼는 건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데 하면서 민간 쪽에서 하는 서비스가 정착될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민등록증으로 갔을 때 똑같이 통신사같이 민간기업에 열어 주실 건지 그게 하나가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신분증 할 때 ‘주민등록증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이러지 않아요. ‘주민등록증이든 운전면허증이든 아무거나 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미 우리는 주민등록증만 아닌 거지 신분 확인을 할 모바일에 대한 서비스가 내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등록이 사실 너무 뒤로 치지면 이것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말씀대로 워낙 기술환경이 좋아지고 있어서 저희도 빠른 속도로 가야 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6개 신분증 중에서 좀 규모가 작은 것들은 모바일 서비스로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고요. 다만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 운전면허증하고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라고 하는 전 단계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 단계가 없이 바로 갔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는 생각들도 있고 전문가들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 신분증 자체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서 그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점검을 하고 빠른 속도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민간 서비스망 말씀이 계신데 꼭 한 국가가 공공망만 다 써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처럼 그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통신사와 같은 민간에 열어주실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영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게 다른데 민간 쪽에서 한 것이 그냥 정착될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우리가 지금 해 봤지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 부분의 비중과 보안성 등등이 명확하다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이

중적으로 관리체계를 갖지 않고도 할 수 있다면 민간 부분과 협의하겠습니다. 중복투자가 되거나 국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이영 위원 그런데 그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법적으로 보장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정부가 하는 거고 범위가 A부터 Z까지 다 신분증으로 통용된다, 다만 민간에서 하는 것은 편의점, 약국, 몇 개에 한정돼서 똑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범사업 하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영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국민들이 쓰는 것의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정착이 끝나가고 있는 우려가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 주민등록도 확인서비스를 그렇게 한다면 거기서는 스펙 같은 게 먼저 앞서서 갈 수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됩니다.

○이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원칙이 하나 서야 될 것 같고요, 분명한 원칙. 그러니까 꼭 우리가 다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법적인 효력이 있고 저기는 여기만 한정돼 있다라는데 그 여기라는 게 현장에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만 늦게 시작을 하고 스펙은 저쪽이 다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끌려가야 되고 시장은 막 혼란감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에서 한번 시행착오를 해 봤기 때문에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안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차피 지금 가기는 갈 건데 시범사업으로 먼저 가겠다라고 한 것에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제 안을 꼭 신중검토보다는 수정 수용으로 해 가지고 그냥 병합 심사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조문이 나오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재호 다른 의견……

이명수 위원님.

○이명수 위원 차관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온라인 시대인데 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이게 10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건데 계속 신중검토로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을 좀 시행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명수 위원 이것을 지금 빨리 도입하기 어려운 게 이것에 따른, 사용했을 경우에 생기는 부

작용 문제나 정보 격차에 따른 활용성의 어떤 제한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그런가요? 이렇게 오래도록 검토하면서 또 신중검토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쓰고 있는 플라스틱 주민증에서 칩을 넣는 전자주민증 논의가 상당히 있었고요. 지금에 와서 보면 전자주민증을 만들었다라면 더 많은 비용과 혼란이 있었을 것 같은 모바일로 넘어가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에서 무형으로 넘어가는 그런 기술 진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등록 4400만, 전 국민이 쓰는 이 신분증에 대해서 지금 상태에서의 기술 상태를 온전히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고요. 이제 모바일 신분증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다만 속도, 결단 이 부분인데요. 그 앞단의 신분증들이 정리가 되면, 확신이 되면 저희도 바로 할 겁니다.

○이명수 위원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는데 지금 답변한 말씀이 10년 전에 답변한 말씀과 별 차이가 없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고, 어차피 이게 되면 모바일하고 현재 쓰고 있는 주민증하고 동시에 병행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이걸 버리고 한쪽만 채택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단계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지.

지금 외국에서 실제 모바일 주민등록증 같은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유럽에 아주 작은 나라에서는 전면적으로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명수 위원 에스토니아가 그런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에스토니아와 같은 나라는 좀 특수한 사정인 거고요. 저희 나라는 이 주민등록번호와 제도 자체가 특수한 환경에서 만들어졌고 그게 IT와 연결되면서 확장된 거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면들을 점점한다는 차원이지만 정부가 이 부분을 지체시키거나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런데 이걸 앞으로 지금 20일…… 금년에 공무원들은 이렇게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공무원 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거기에 문제가 크게 없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지금까지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글썄요,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우리는 남북관계도 있고 위·변조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다 후속대책을 만들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속도가 늦어요. 25년에 청소년, 그다음에 외국인등록증 한다는 얘기인데 조금 사회의 흐름이나……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단축해서 한꺼번에 정리될 겁니다.

○**이명수 위원** 좀 더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법률안 자체에 대한 것보다 차관께 현황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요즘은 전부 핸드폰으로 다 결제하고 그런 것 때문에 존경하는 이영 위원 외 많은 분들이 모바일로 가자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국회에서 법률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는 사법경찰관리가 법에 돼 있는데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면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현행법으로……

○**김형동 위원** 그런데 시스템상으로 어떻습니까? 그냥 구두로 나 주민번호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다 요즘 단말기 가지고 다니니까 그걸로 확인이 되잖아요, 인식도 되고.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조회되지요.

○**김형동 위원** 오히려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진이 현재 본인하고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다시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투명하게 개인정보, 국민에 대한 정보 관리만 된다 그러면 차제에 플라스틱 자체도 이제는 없애고 또 하나,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그 제도도 이제는 없어도 되지 않겠나라는 정도로 한번 의견을 드리고요.

이것은 운영하는 정부 측에서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혹시 정부 측에서도 한번 필요하다면 현재 트렌드에 맞는 그런 것도 개정안을 한번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형동 위원** 지갑에 주민등록증 하나 가지고 다니려고 요즘 지갑 가지고 다니는 사람 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맞습니다.

○**김형동 위원** 사실상 실효된 그런 법률 아닌가 싶어서……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조금 전에 이 사안은 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정해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정해서 정부안에 담을 조문을 지금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금 명확하게 들어갈 조문이 없기 때문에 정보에서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한 조항을 넣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별도의 조문을 하나 만드는 것으로 정부 측과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주민등록사항 확인서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서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서는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로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등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기기를 통하여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확인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주민등록사항 확인서비스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면 주민등록증을 항상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주민등록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쪽 및 맨 마지막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증은 발급대상이 17세 이상의 국민으로 다른 신분증에 비해 대상자가 많고 지문 등 생체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모바일화에 따른 안전성과 보안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확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업이 내년 2월 달에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행일이 지금 현

재 법에는 공포 후 1년으로 돼 있는데 공포 후 6개월로 해 주시면 저희 시스템 개통과 시차를 줄여서 보다 효율적으로 주민들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에 위원님들…… 6개월로 빨리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3쪽 계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은 전입세대확인서라는 문서에 대한 근거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종전에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뿐만 아니라 교부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등록표 중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현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라 해당 물건지에 전입신고되어 있는 사람의 성명과 전입 일자를 열람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법상의 근거가 미비하고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별정 서식이 아닌 출력물로 제공하고 있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열람 내역을 법정 서식으로 제공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되어 있는 세대주 성명과 전입일자, 각 세대의 동거인 성명과 전입일자 그리고 세대원 중에서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가 있으면 그 세대원 성명과 전입일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 또는 경매 시 선순위자 유무를 확인하는 용도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복잡·다원화로 인한 경제적 이해관계인이 증가하고 담보대출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구비서류로 요구하는 등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세대명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시행규칙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입세대 열람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권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7쪽입니다.

17쪽 부분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의 경우에 관련 개정이 필요한 조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련 개정 규정 전문을 포함하지 않도록 지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2쪽은 정부안에서 지금까지 보고드렸던 내용 이외의 조문 정비 사항입니다.

대표적으로 주민등록 관장 주체가 조금 더 명확하게 되는 부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조문 정리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저희가 여기에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특별한 것 없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특별한 건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 발전 속도에 정부가 너무 못 따라가고 규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어쨌든 리드를 해 나가야 그 업종이 발달이 돼서 민간이 더 활성화되는 입장인데 정부에서는 계속 그런 규제로 일관하고 있어서 모바일이나 이런 문제는 어쨌든 시도를 해 놓으면 그만큼 성숙되고 따라하고 우리가 다른 데 수출도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부가 모든 면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82)

1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53)
(10시38분)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의사일정 제9항에서 1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안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자료 3쪽은 희생자 및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희생자 및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역시 넓히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윤상현 의원안은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의 유족도 이 법에 따른 유족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명수 의원안은 강제동원 희생자·생환자, 미수금피해자에 국내로 강제동원된 사람도 포함하고 그 유족도 이 법에 따른 유족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 간략한 요약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대상자 모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었던 기본적인 사실은 동일하므로 희생자 및 유족의 범위를 넓혀서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 법의 목적이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 개정안의 내용은 당시 협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대상까지 확대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 측도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수 위원님.

○이명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문제는 다른 과거사 문제하고는 좀…… 우리가 과거사 하면 대개 해방 이후의 문제인데 이건 해방 전의 문제고 역사적인 아픔과 고통으로 계속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일본에서 강제노역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이미 보상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성격의 분들인데 장소가 다른 국내나 해외, 일본이 아닌 다른 동남아에서 희생된 분들, 그분들은 보상을 안 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이 부분을 용역을 했어요. 총 대상이 얼마나 되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까지 다 조사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의 의지는 계속…… 신중 검토라는 게 사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한일 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마는 이것은 65년에 한 일본과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 협정하고 상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매듭을 지을 때가 안 됐는가.

관련자들이 거의 돌아가시고 이제 남은 분들이 얼마 없습니다. 일본 본토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필요한 보상을 해 주고, 배·보상 뭐 그런 걸 떠나서 하여튼 위로금 성격의 그걸 지급했는데 본토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강제징용돼서 희생된 분들은 그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정부의 의지 문제고, 이제 우리가 해방돼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이분들에게 조금도 인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좀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갖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아마 답변 들어볼 필요……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좀 다른 답변 해 보세요, 차관님.

○소위원장 박재호 돈만 있으면 해 줍시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이게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위원님께서 무슨 답변이 나오실지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관계부처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가 협의를 해도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는 상황임을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 그런 답변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됐는데 그렇게 하면 차관님 답변이 과거의 답변하고 똑같은 답변이 돼요. 그러면 오늘 여기 나올 때는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보고 이번에는 뭔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 판단을 하고 와 주셔야지……

이게 원래 국무총리 소속 산하의 위원회인데 그 주관 부처가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러면 일단 국무총리실과 또 그때 관련됐던 부서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가져가야지 ‘행정안전부차관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차관으로서 이 얘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혀 여기에 대한 의지나 여기에 대한 관련 검토를 안 하고 나온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차관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고 그런데 언제까지 그 답변만 계속 하고 있을 거냐 자꾸…… 돌아가시고 이제 남은 생존자가 거의 없습니다.

정부가 물론 재정이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때 판단으로는 아마 7000억 내지 8000억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렇게 나왔어요. 1조라는 돈이 지금 우리한테는 개인적으로는 큰 돈이지만 정부에서 1조는 의지의 문제예요. 그걸 역사적으로 매듭을 못 짓고 계속 이렇게 나갈 거냐,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아픔을 우리 스스로 치유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서 일본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 전체 입장에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가지고 오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행안부차관으로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돈 문제는 별개고, 판단은 이런 보상이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까?

이미 선행해서 몇천억을 보상을 해 줬어요, 일본 본토에서 돌아가신 분들.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본토가 아닌 타 지역, 국내도 많고 동남아의 여러 곳에서 어떻게 보면 본토 이상으로 더 어렵고 힘들게 고충받은 분들인 해외 동남아의 조그마한 섬에서 외롭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 만한 나라가 됐으니까 뭔가 위로하는 일을 하자는 건데 정부에서 소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 요구를 하는 게 보상 내지는 이런 위로금 차원의 지급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걸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고요.

필요하다고 하는 거야 어느 국민이 그걸 안 된다 하겠습니까?

○이명수 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필요성은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외교적인 문제도 있는 거고 또 그분들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도 아직은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재단과 관련된 기관에서는 기록 관리, 기록은 철저히 챙겨보고 있고요. 잘 챙겨서 어느 때인가 이 문제가 다시 제기가 되면 근거 자료들은 정리를 해 놔야 되니까 그 부분은 충실하게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에 대한 위령이나 또 필요한, 발견되었을 때 DNA 검사라든가 또 유해 봉환 이런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포괄적으로 위로금을 드릴 수 있는 거냐, 언제 하는 게 좋은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명수 위원 재단의 정관 내용을 보세요, 그런 사업을 하게 되어 있다. 안 되어 있어요. 재단은 일정한, 지금 말씀한 위령이라든가 몇 가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지 강제징용된 분들한테 보상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하는 내용이 재단에 안 들어 있어요. 정확히 부처에서 파악도 안 하고 나오시면……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기록을 좀……

○이명수 위원 기록 문제는 청구하는 사람이 제기하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도 그렇게 했어요. 사진을 제시하든지 여러 가지 관련 증빙을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그걸 확인해서 그게 인정이 되면 위로금을 지급했지.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제가 말씀드린 기록은 이 관련되는 기록을 얘기하는 거지 건건에 대한 기록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강제동원되신 분들에 대한……

○이명수 위원 기록이 없다는 말씀……

차관님, 이거 냉철하게 말씀하세요.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기록이 쌓이고 쌓여 있습니다. 정혜경 박사라는 분이 그것만 평생 연구한 분이예요. 제대로 파악하고 나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개별 지급할 때는 본인들이, 자기 또는 유족들이 희생자가 가족이고 강제 징용했다는 그런 증빙자료를 가져오는 분만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냥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신청주의예요. 그걸 정부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너무 많이 말씀합니다만 이것에 대한 자료는 쌓이고 쌓여서, 잔뜩 쌓여서 그 쌓인 자료를 보관할 데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준비를……

그러니까 법령 준비할 때 어떤 것은 좀 준비해 가지고 나오고 어떤 건 간단하게 나와서 즉답도 하는데 역사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조금 파악하고 나오시는 게 필요해요. 전혀 준비가 안 된 답변을 하니까 제가 대화가 잘 안 되네요.

○소위원장 박재호 차관님, 이 문제는 우리가 어쨌든 해결을 하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거나 여러 가지를 미리 좀 해 놔야지 우리가 다음에……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안부에서 한번 준비를 하시고,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건 타 부처하고 의논을 해서 국회가 법을 낼 때 보상 문제나 이런 것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선 준비라도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하셔서, 이명수 위원님에게 좀 듣기도 하시고 또 조언도 받으셔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형동 위원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정부 의견이 신중 검토인데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이게 왜…… 이분들이 강제동원 희생자임이 밝혀졌을 때 이분들이 국가에 대해서 또는 국가가 이분들을 위해서, 어제 오늘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손해배상이 되든 보상이 되든…… 국가가 국민의 삶을 못 챙겨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근거가 돼요? 정부가 의견을 내는 데 있어서 신중 검토의 근거를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이렇게 앞େ다가, 제일 모두에 적어 봤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게 잘 아시겠지만……

○김형동 위원 잘 몰라서 여쭙 보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일제강점기라고 할 때 국가의 존재가 명확하지가 않고요. 그후 가해자의……

○김형동 위원 차관님, 그것은 혹시나 나중에 또 기록에 남아 가지고……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임정부터 국가가 만들어졌고, 근대국가 얘기했을 때 그 논리가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를 따지는 게 아니고.

한일 청구권 협정을 신중 검토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로 들었는데, 권리·의무 관계와 관련돼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국가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한일 청구권 협정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인도적 차원에서의 위로금 지급의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19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후속조치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거기서부터 발단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형동 위원 이 법의 취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역사적 경과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또 그동안에 지금 인원이 650만 명 그 이상이었지요, 추정되는 분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어떤 예를 갖추려고 노력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살게 되었는데 그동안 650만 명 이상 되는 당사자 또는 유가족들이 분명하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대해서 특별히 요구를 하지 않았던 이 상황을 감안했을 때 지금이라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발로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65년 얘기를, 60년 전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국가 간의 문제지 국가가 체결한 협약이 대한민국 국민을 다 기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현실적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시작은 해 보자라는 것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빈약한 근거를 내세워서 자꾸 빠져나가는 것하고는 크나큰 차이가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명수 위원 조금만 더 할게요.

○소위원장 박재호 예, 이명수 위원님.

○이명수 위원 차관님이 바쁘다 보니까 앞의 연혁을 충분히 안 알고 나오셨어요. 저는 국회에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차관님보다는 조금 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한일 청구권 문제는 직접 관련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일본보고 돈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보면 이러이러한 경우 그때 정리를 한다. 다만 나중에 사정 변경이 있을 때는 별도로 한다는 단서규정이 있어요. 그게 정부가 입법의 필요성을 반대할 이유가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관련은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댄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줘야 된다 그래서 위로금을 준 거예요. 이미 상당 부분, 아까 거듭 말씀한 대로 본토는 다 드렸다고요, 위로금 한 이삼천만 원씩. 그런데 본토가 아닌 타 지역에서 희생된 사람은,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기간 동안 그보다 어떻게 보면 많이 고생한 분들인데 왜 그분들을 제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2013년에 그때 따로 추가로 용역을 준 거예요. 그때 쫓더니 대략 인원이 얼마가 되고 금액이 얼마가 필요하다, 지금은 조금 금액이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7000억 그게 추가 소요된다 그것까지 전문가 용역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입법을 통해서 그걸 빨리 실현해 주자,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다 돌아가시고 계신 분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돌아가신 분과 생존해 계신 분 중에 확실히 입증이 되는 분은 신청주의로 해서 정부가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에서 돈을 받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일 청구권 그 얘기가 맞지요. 우리 정부가 일본에 돈 달라고 해서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아까 입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걸로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잘 알겠고요. 현재 이 현행법 자체의 목적에서부터 65년도 한일협정에 관한 문제들이 이 법 1조(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하려면 거의 제정 수준의 완전한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현행법의 개정을 가지고 담기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관계부처랑 협의도 해 보고 논의도 해

보고 왜 안 했겠습니까? 했지만 시점상으로 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이 안 받쳐 줘서 그런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 법 제1조에 목적이 나와 있어서 그 목적을 보시면 이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이런 것들이 보여져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앞에 목적에 나오는 ‘관련하여’ 그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 이분들한테 추가로 어떤 금전을 지급하는 게 협정에 나오거나 직접 관련된 건 아니에요. 그건 간접적인 거예요. 앞에 수식으로 붙인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10년 넘도록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어느 정도 더 잘 알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알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재원 조성방법을, 사실은 지금까지 재원이 많이 든다 이런 이유로 거부를 했어요, 정부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1조가 안 되는 이런 비용을 언제까지 역사적인 부담으로 계속 남겨 둘 거냐,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 아니냐. 문제인 정부에서 이런 것 다 해 줬다 그렇게만 해도 훨씬 역사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소위원장 박재호 차관님, 저번에 용역 결과 나온 것하고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보내 주시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이 문제가 금액이 그 정도 된다 하면, 특히 또 국내의 했던 분들도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율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 자료도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의논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더 해 보는 걸로 할게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미수금지원금의 현실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국가가 미수금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해서 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2010년 이 법의 제정 이후 10년이 지났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지급하려는 취지입니다.

현재의 산정방식은 경제성장이 고려되지 않았고 실제 미수금지원금의 규모가 작게 산정되어 유의미한 금액이 아니어서 실제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한 수준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이 법의 입법 취지가 재산권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국가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신중 검토를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1쪽,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에 희생자의 배우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현행법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가 노령이나 질병 또는 장애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들 이외에 희생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을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지원금 지급 근거를 두고 있는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해당 사건 당사자인 피해자 또는 희생자를 의료지원금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과거사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4쪽입니다.

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미수금지원금을 지급하고,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로금을 지급받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군인·군무원·노무자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 중 생존해 있는 배우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적 차원의 처우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 이미 실시한 바 있는 위로금 등에 대하여 특정 대상에게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그 지급 여부 및 구체적인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국가의 재정 여건도 함께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군인·군무원·노무자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강제동원 희생자에 한하여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은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8쪽, 위원회 재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2015년 12월 31일로 활동 기간이 종료된 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려는 내용입니다.

윤상현 의원안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최대 3년까지로 하고 조사기간, 위로금 등 신청기한과 소멸시효 등을 삭제하였으며 이명수 의원안은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최대 5년까지로 하고 조사기간 2년, 위로금 신청기한 3년, 소멸시효 3년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에 과거에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의 추가 구제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등 위원회의 재개 필요성은

인정되나 위원회가 2010년 3월 22일 제정·시행된 이 법에 따라 구성되어 201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규정한 이래 다섯 차례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였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윤상현 의원안은 조사기간이나 위로금 등 신청기한, 소멸시효 조항을 삭제하였는데 진상조사나 위로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감안하면 이러한 내용은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개정안에 대한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제2기 진화위가 출범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서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24쪽, 유전자검사의 실시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피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사망한 사람의 유해에 대한 발굴·수습·봉환에 필요한 유전정보를 얻기 위하여 유해 및 그 유족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8조 2호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수습·봉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제동원 희생자의 경우 유전자정보를 통한 피해자의 신원 판별이 필수적인데 피해자의 유해를 판별할 유전자정보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유전자검사를 통한 유전자정보의 취득·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타 입법례와 같이 유해와 유족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이 법에 명시하고 공신력 있고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나 개정안이 위원회를 검사 주체로 하는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위원회 재개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정 수용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른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실제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국과수를 통한 행정안전부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수정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피해진상 재조사에 관한 29쪽입니다.

개정안은 각하나 기각결정 건에 대하여도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경우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경우라도 조사 불능이거나 피해판정 불능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각하결정이나 기각결정 이후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경우에는 재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각하결정, 기각결정, 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이후에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경우에 신청인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위원회 재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앞부분 위원회 재개와 연결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31쪽, 벌금 상향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부분 역시 위원회 재개와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직무를 행하는 위원·직원·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감정인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벌금의 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하여 5년 5000만 원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르면 일응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 부분만 개정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벌

금 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입법례와 같기 때문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기타 사항입니다.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하여 조사·축적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위원회가 기억·화해·미래재단과 정보망으로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의 심사 결과에 맞춰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은 과거 결과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관련 재단의 사업 중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을 삭제하는 내용은 역사관이 이미 건립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37조의 내용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14)

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49)

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11)

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0)

(11시08분)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사항별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자료 2쪽은 먼저 지방공기업

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의 도입에 관한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공기업법 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안들은 지방의회가 지방공기업 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춘식 의원안은 지방공사·지방공단장의 장으로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오영훈 의원안은 시·도의회가 정무직 부시장·부지사, 제주도 행정시장, 지방공사·공단의 장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실시를 그리고 이형석 의원안은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는 대상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고, 최춘식 의원 대표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의 임명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지방공기업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해 그러니까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임직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괄적인 검토를 먼저 말씀드리면 개정안들은 지방의회가 지방공기업 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인사청문의 주체·대상·실시 규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인사청문 제도의 도입 여부 그리고 도입한다면 주체·대상 등과 함께 어떤 법률에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원추천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공사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한다면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후보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지방공기업 기관장 임명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사청문 제도 도입과 함께 공기업 기관장 임명에 소요되는 시간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오영훈 의원안과 같이 정무직 부단체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의 도입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오영훈 의원안에서 정무직 부단체장과 제주도 행정시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인사청문 제도 도입에 따른 후보자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가능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인사권·조직권 등의 제약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행사에 관한 부분을 지방자치법, 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꼭 필요하시다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로…… 공기업법이 있기 때문에 공사나 공단 사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량적 규정과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다면 인사추천위원회와 같은 그런 절차는 조금 생략해 주는 것이 이 법 개정의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 위원님.

○이영 위원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들을 좀 봤을 때 이번에 대장동 사태도 그렇고 이게 사실 행안부 쪽에 말씀드릴 일이 아니라 여야가 참 반성해야 될 일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 규모가 엄청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낙하산 인사가 다 나쁜 건 아니지요. 위에서 봤을 때 경험과 전문성이 확보된 분들에 대한 풀을 보통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접근하실 수 있다고 하면 적절한 인사도 가능한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까지 측근이나 캠프 인사들이 내려감으로 인하여…… 사실 직원들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가장 원하는 건 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가시는 것이다. 비전문가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정말 기관이 뒤로 가는 것을, 이것을 막을 수도 없고 방관할 수도 없고 심리적으로 너무 지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오는 건 괜찮는데 일은 안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게 우리의 얘기라고 말을 못 할 게 아니라 규정을 확실히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에 있는 것이…… 그래서 인사청문회라도 도입하자라는 것도 숨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대를 메고 권력에 영향받지 않는 인사가 어느 정도는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차관님 행안부 내부적으로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조용히라도?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가 됐었고요. 지금 상당 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자체 제도들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 또 지방의회……

○이영 위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임추위 자체를 측근들로 꾸리고요. 임추위 내에서…… 그러니까 임추위를 만드는 게 되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영 위원 그리고 임추위 자체에 내부인도 들어가시지만 외부 전문가들이 들어가세요. 우리가 예전이랑 달라진 건 뭐냐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고 그 형태를 보면, 형식을 보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형식을 깨 보면 그냥 계속 고도화만 되고 있는 거지요. 이 내용이 점점 복잡해져만 가고 있지 알맹이는 없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임추위 여러 번 들어가 봤지만 사실 그렇게 회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여기 행안위의 여당 야당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해 주실 것 같으니까 저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차관님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게 절차상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작동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다 아는 얘기니까 이걸 어떻게 좀 더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서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형석 위원님 하시고 이해식 위원님.

○이형석 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치단체장 임명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사청문 도입을 법률에 넣자고 말씀드렸던 내용은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자치단체에서 자체

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개별적으로 자치단체들을 비교해 보면 이게 굉장히 중구난방이에요. 기준도 없고, 어떤 데는 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저도 지금 발의를 했는데요.

저는 업관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임명된 사람들의 전문성이나 그리고 업무 능력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차관님 말씀대로 지방공기업만 하게 되면 또 많은 부분에 사각지대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청문 제도 자체는 지방자치법에 규정을 하고 그 대상이나 그런 것은 조례에 위임해서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만 여기 대상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범위를 지방자치법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규정 도입을 지방자치법에 명시하고 나서 그다음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례에 위임해 주는 형태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는 인사청문 제도 자체는 지방의회가 실시를 하고 있고 광역단체들은 거의 조례들을 다 만들어서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해식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는데 다만 이것을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기본법에다가 넣어야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해식 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걸 지방의회법을 따로 발의를 했습니다. 지방의회법에 이런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하고 실시하는 그 법적 근거를 지금 저도 제정안을 내서 발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걸 좀 다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형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인데요. 이게 공기업만으로 대상을 한정할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무직 공직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뒤야 되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법에, 지금은 지방자치법밖에 없는 거니까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둘 것이냐 아니면 지방의회법 같은 걸 제

정을 해서 거기다 둘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특별한 의견 없으면 다음 넘어가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10쪽입니다.

최춘식 의원이 발의하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하면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섭단체는 일정한 정파에 속하는 의원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정당 간 이해와 요구를 조정하기 위한 협의 기구로 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단체로서 국회법은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하고 교섭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일정한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이 사전에 그 의사를 종합·통일하여 각 교섭단체 간의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소수 정당의 의사 개진의 어려움 그리고 지방의회가 그 규모와 여건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실익 그리고 교섭 상대 없는 교섭단체가 구성될 가능성, 교섭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지방의회 자율의 영역이 아닌 법률로 정할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섭단체를 광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대도시 자치구 같은 데도 교섭단체는 기초단위에서도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군 단위 같은 경우에 의원 숫자가 10명 미만인 작은 의회에서는 교섭단체의 구성에 실익이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이것도 역시 이런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기본법에 넣기보다는 우리가 지방의회법을 따로 만들어서 근본적인 근거를 담고 구체적으로 이런 지방의회의 어떤 개별적 특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들지 안 들지에서부터 운영하는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은 시행령으로 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순수 지방자치에 관한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다 법제화하는 것이 자치와 분권에 맞는 거냐라고 하는 논의들은 꾸준히 있었고요.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의회 의원이 7명으로 돼 있는 기초지자체가 54개나 됩니다. 지자체는 서울·경기 큰 지자체부터 작은 지자체까지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까지 법률로 정하기는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최춘식 위원님.

○**최춘식 위원** 차관님, 이 문제가 사실 기초 같은 경우는 큰 저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광역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실태가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에 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사실상 그게 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규정을 규범화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이것이 어떤 법과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가지고 그대로 하게 놔두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관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생각 어떠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와 이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이고요. 그 부분은 공무원들의 근무를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 법 규정을 뒤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저희가 조금……

○**최춘식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은 일례를 든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그것을 그냥 암암리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해 가지고 방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정말 합당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예 교섭단체를 지금 현 상태에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맞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선을 그어 줘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실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한 제안을 또 제도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근거법을…… 지방의회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 명시해 놓는 것이 바람직……

○**최춘식 위원** 차관님, 그러면 차관님 생각은 교섭단체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아닙니다. 이미 지방차원에서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자치법에다가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최춘식 위원** 법으로 규정하는 자체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또 지방의회 쪽에서 입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적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이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말씀하십시오.

○**김형동 위원** 부수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차관께서 잠깐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내년부터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형동 위원** 그런데 의회에 한번 입직을 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집행부하고 분리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원칙적으로는 분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사실상 인사 범위가 축소돼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놔습니다.

○**김형동 위원** 열어 놔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형동 위원** 아, 그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안 그러면……

○**김형동 위원**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듣고 하나 더, 이해는 했는데 현행 가 있는 파견도 사실상 근거는 없다면서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 파견은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김형동 위원** 근거 있습니까?

○**최춘식 위원** 없어요, 없어.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아니, 근거를 말씀드리는데는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의장의 지휘를 받아서 근무를 지원할 수는 있는 것이고요. 여기 조례나 규칙에 의하면 교섭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김형동 위원** 교섭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 더, 우리 안동·예천같이 지역에 있거나 경북같이 영세한 의회들이 많은,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 관할이 좁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도 의견을 내시는 게 광역 단위로 의회가 인사를 내년부터 따로 하게 되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교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회 간에, 다시 말해서 광역·기초 또는 도 내, 우리 같으면 23개 시군 기초의원이 있거든요. 도까지 포함해 가지고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나 근거도 행안부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거는 좀 심도 있는……

다 했지요? 한 가지 남았어요?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한 가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3쪽 부분입니다.

시·도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고 지

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미 자치법 개정 때 반영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공기업이든 이런 것에 있어서는 어쨌든 본인이 임명을 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자율성은 줘야 되고 또 의회하고의 협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그거는 지방자치에 놔 놓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요.

또 하나 말씀을 더 드리면 어떤 분들이, 그 공단이나 공사에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사장이 된다고 해서 공사가 잘될까요? 또 외부에서 아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들어온다 해서 그 공사가 못되고 잘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어떤 분이 오시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오느냐 사람에 따라서 그 공기업이 발전하고 또는 퇴행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통령중심제하 또 지방자치는 어쨌든 시장이 권한을 갖고 5년 동안 책임지고 일을 하고 못하면 다시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엽관제 국가에서 지금 인사시스템이 어찌 보면 잘못돼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23)

1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699)

(11시30분)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1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사안별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자료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영교 의원안 58조 9항에서는 기관장의 이해충돌 시 감사가 기관을 대표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지방공사에 대해 별다른 대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과 같이 지방공사에 관한 규정을 58조에 두는 경우에 지방공단에 관한 규정 사항을 76조에서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한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이 기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에도 기관을 대표하도록 한다면 이해충돌에 따른 지방공기업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바 이해충돌 사안에 있어서는 감사가 기관을 대표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기관을 대표하는 사항은 임면보다는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임원의 임면 등을 규정하는 조항보다는 임원의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이해충돌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 보다 맞는 것으로 보이고, 기관장이 이해충돌 상황에서는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지방공기업 기관장이 해당 기관을 대표하고 기관 업무를 총괄한다는 규정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 5쪽입니다.

서영교 의원안과 정부안에 공히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윤리경영 저해 등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서영교 의원안과 정부안은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등의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평가 결과를 조정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에 주의·경고 조치를 하거나 평가급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영평가의 공정성·신뢰성 확보와 피평가자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

가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유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치 사항입니다.

경영평가 결과의 조정,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의·경고 등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평가급 조정 요청에 대해서는 두 안이 공히 들어가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정부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안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관장에게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문언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사상 조치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 기관장이나 감사, 비상임이사에 대한 임면권은 지자체장에게 그리고 상임이사나 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지자체장이 임명한 사장에게 있다는 점에서 지방공기업의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직접적인 인사상 조치 요구는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는바 ‘평가급 조정 등을 요청’하는 것을 ‘평가급 조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수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인사상의 조치 등을 지방공기업에 대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상 조치 요구권을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영교 의원안에 따른 사회적 물의 또는 중대한 안전사고는 그 범위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안전사고의 발생 그 자체가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며 정부안에 따른 부당한 평가 개입의 경우에는 경영평가 자료 미제출이나 거짓 제출에 포함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수정요건에 준하여 규정함으로써 명확성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절차에 있어서는 정부안과 같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면 조치 여부 결정 시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성

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결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수정의견은 7쪽과 8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전문위원 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 궁금한 것 한번 여쭙볼게요.

지금 여기 행안부장관의 지방공기업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 조치로 과도 해석이 좀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형사사건이나 임원들이 기소를 당하거나 그랬을 때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재판 결과까지 보기 위해서? 그럴 때 또는 특수한 경우에는 그런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낫지 않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우리나라 인사규정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 규정 범위 내에서 조치가 되고요. 단체장이 임명권자라고 그래서 인사규정에 반해서 어떤 형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인사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장, 인사권자가 그것에 반해서 하는 것은 감사의 대상이 되고요. 단체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저희가……

○김민철 위원 그대로 놔두고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끝나면 다시 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것은 인사권자의 범위 내의 문제이고요. 그 조치가 법령에 반한다면 인사권자 자체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사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기에는 법체계상……

○김민철 위원 인사권을 행사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요구, 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이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것은 감사로도 가능합니다.

○김민철 위원 지금도 감사로 해서?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인사 조치를 권고하고 합니다.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 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서영교 의원안에서는 공무원 의제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공사·공단의 임직원에 대해서만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서영교 의원안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임직원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임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 규정을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는 목적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도입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자산규모를 고려할 때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여 지방공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연구가 가지는 중요성이 크다는 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해 받은 등급에 따라 임직원의 평가급이 차등 지급되고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에 다음 연도 연봉이 삭감되는 등 임직원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는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임직원에는 파견직 5명이 포함되어 있고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는 행정안전부차관과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15항은 제안 취지의 상당 부분이 반영

된 점을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제16항은 제안 취지의 일부분만 반영된 점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165)

1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861)

(11시41분)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사안별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관련해서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예, 말씀하십시오.

○김형동 위원 쉬지도 않고 두 시간을 달려왔는데요, 점심식사 시간도 다가오는데……

○소위원장 박재호 10분만, 이것만 끝내고 그만하겠습니다, 상정을 했으니깐. 이게 간단해서……

○김형동 위원 간단한 겁니까?

○소위원장 박재호 예, 간단한 거라서.

혹시나 반대의견이 있으면 하지 말고 이런 거니까, 간단해서 이것까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야기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지방연구원의 설립이 가능한 인구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을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와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김정호 의원안과 박완주 의원안에서는 이 인구 100만 이상의 시를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연구원 설립 요건을 50만 이상의 도시로 완화한다면 최대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연구원을 신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대도시의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점, 도시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점, 지방분권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의 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무들을 적극적으로 이양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고 또 기존의 도 지방연구원과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대도시 지방연구원의 기능이 중복될 수 있는 점, 동일한 생활권 내에 다수의 지방연구원이 설립된다면 인접한 시도와의 정책 연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다수의 지방연구원이 일시에 신규 설립될 경우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개정안 내용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50만 이상에 연고를 둘 수 있도록 하자고 나왔는데 그 이하에 두면 어떤 게 문제가 되나요? 이것을 굳이 50만, 100만 두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례 요구도 나와 있고요, 이미 100만 이상 특례시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인정을 했고요.

50만의 객관적 기준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명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48만 도시는 못 만드는 거냐 이렇게 되는데, 점진적으로 확대는 해 오고 있고요. 또 다 이것을 풀어 주면 너무 섹션이 나뉘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50만 이상 도시의 수요만 받도록 이렇게 개정해 보려고 합니다.

○김민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연구원 설립하는 데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 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데 굳이 100만 이상, 50만 이상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요즘 지방자치 시대로 많이 지방분권화가 되고 있으면 이 기준을 아예 없애고 그냥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연구도 하게 만들고 이런 기능이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인접이나 경기도다, 크다 그러면 거기는 연구원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굳이 인구수로 나눌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원 설립을 그 지자체에서도 필요시 할 수 있다라고 그냥 풀어 주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소위원장 박재호 이해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해식 위원 차관님, 지방자치법 바꿔 가지고 특별지방자치단체 만들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구 한 이삼십만 되는 시하고 옆에 군하고 해 가지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 그 인구가 예를 들어서 50만이 넘었다 그러면 그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그 지역에 이런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원을 설립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특례 인정할 겁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이해식 위원 특례 인정을 하면…… 행안부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했습니까, 실무적으로?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왜냐하면 좀 더 광역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기반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특례로 다 인정을 할 겁니다.

○이해식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50만의 도시에서 연구원을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지역이 공동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연구원을 설립하게 하고 연구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모색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런 부분, 몇 개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특례도 인정해 주고 지원도 강화한다는 게 행안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이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인구수 기준으로 해서…… 연구원을 만드는 데 인구수로 하는 게 이게 맞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리고 그게 무슨 어떤 특례가 대단히 있는 것처럼 50만 이상, 100만 이상, 그 이하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저는 없애자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민철 위원 지금 말씀대로 그걸 만들어서 득이 된다고 하면 지자체는 만들 거고 그게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만들 거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유롭게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좀 수정이라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형동 위원 차관이 방금 말씀하신 의견이,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은 약간 소극적인 부분도 들어 있는데 개정안 수용한다 이게 양측 의견이 같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지금 의원발의안이기에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수정해서 수용하겠다는 거고요. 저희가 정부안으로 50만 기준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입법안이기에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형동 위원 검토의견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개정안에 대해서 수용한다 이 말씀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하나 더 여쭙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철 위원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인구 기준을 두는 것이 입법 취지가 됩니까? 예를 들면 설립이 됐을 때 국고를 지원한다든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던 되는 것 아니겠어요, 3만이든 5만이든?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꼭 법에 있어야 하고 금지사항이 아니잖아요, 장려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쟁점이 되지요? 박완주 의원님께 여쭙 봐야 되는 거예요?

○김민철 위원 지금까지 100만 이상으로 돼 있는데 50만 완화하려니까 그것을 다 없애자 이렇게 제가 그런 거고……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이게 50만이라는 기준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지방자치법상에 50만 기준들이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만 이상이 되면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분기점들이 있는데……

○김형동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이 이 연구원이 인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다못해 법인이라는 그런 신고나 인가 기준을 갖춰야 된다는지 그런 게 부수적으로 따르나 이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아닙니다.

○김형동 위원 그런데 이걸 뭐……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100만 이상 특례와 50만 이상 특례가 있기 때

문에 자꾸 이 기준을 원용해서 쓰는 거고요. 명확하게 50만이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기준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 풀어주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김형동 위원 이거 만드는 게 자율 아닌가……

○김민철 위원 그러니까 이왕 그거 완화하고 연구원은 다 해 주자고……

○소위원장 박재호 최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춘식 위원 차관님,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쭙보는 건데요.

여기 지방연구원 현황표가 뒷장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수입 내역에 출연금, 사업수입,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수입은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주로 용역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광역 같으면 기초로부터 용역도 받고요. 또 관련되는 기관으로부터 같이 대학이나 이런 데하고 조인해서 연구용역을 수탁했을 때 수익이 되는 그 수익구조가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운영상의 수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연구원을 운영을 하면 통상 적자가 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연구원은 보통은 기금으로 출발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데서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고요. 기금의 수익과 일정 부분 수탁 사업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해 가면서 수익구조를 맞춰 가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자율적으로 인구 상한선을 두지 않고 다 풀어 줬을 때 전체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게 되면 기초 같은 경우는 수탁업무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부 그 기초지자체에서 재정, 재원을 보전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기초지자체의 정규 조직과의 업무 중복성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합니다.

○최춘식 위원 결국 자치단체의 운영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겠네요, 이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 보통 지자체에서도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김민철 위원 그러면 연구원이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만들어서 나온 부분을, 정부에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아까 인정해 주고 있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당성조사나 이런 걸 예비적으로 해야 될 때는 예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걸 확보했는데 이렇게 연구원이 있으면 그 연구원 자체를 활용해서 예비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전에 그 비용, 한참 몇 년 오래 됐는데 그때 연구원을 설립해서…… 지자체에서 연구원 설립하면 그 용역 비용, 나가는 비용 가지고 거기서 다 처리가 되고 더 남겠더라고요, 그리고 더 심도 있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인구 기준을 굳이 둘 필요가 있는가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광역과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용역 수요가 좀 있고요. 있는데 기초 같은 경우는 연간 중앙정부나 광역과 관련된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관련되는 용역들을 수행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지요.

○김민철 위원 그런 데는 해 가지고 안 만들지요, 연구원을. 그러니까 그걸 자율적으로 하자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백혜련 위원 이 법안은 아니지만 저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어차피 법안이 50만 이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위한 도구나 이렇게 전략할 위험성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요가 없는데 결국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 저도 백혜련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기준 없이 이걸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면 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 운영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차관님 말씀대로, 저도 광주에서 경제부시장을 했습니다만 기초자치단

체 같은 경우는 그 용역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의 출연금만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초자치단체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일정 기준을 뒤서 연구원을 설립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 논의는 나뉘는 다 끝내고 이야기를 합시다.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그러면 나뉘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박완주 의원안에서는 경영공시 사항과 연구과제 실적의 공시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는 공시사항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데 박완주 의원안에서는 지방연구원이 경영공시 사항과 연구과제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시하도록 한다면 연구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 결과가 보다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지방연구원들이 모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서 경영공시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에서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경영공시 사항을 이 법의 개정안과 같이 둔다면 지방연구원법에서는 지방 출자·출연법과 달리 성과계약서 체결에 관한 사항이 없으므로 조문을 일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개의 시기와 주기 등에 대해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효적인 공개를 위해서는 위임 규정을 마련하여 대통령령에서 공개의 시기 및 주기 등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정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상반되고 그리고 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반드시 있을 것인데, 기존 있는 연구원들의 출자받은 돈하고 인원수에 따라서 손해를 보고 있는 기관들이 지방정부에서 대신 금

액을 메우고 있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법을 다시 논의하는 게 낫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위원장님, 지금 50만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겁니다. 50만은 다 동의를 하는 거고……

○김민철 위원 아니, 제가 동의를 안 하나까. 그 밑에까지 다……

○백혜련 위원 그것 아니에요? 그래도 50만까지는 동의하는 것 아니에요?

○김민철 위원 50만 해 놓으면 밑에는 하지 말자는 뜻이니까 그것을 저기를 하자는 거지요. 그러면 검토를 한 번 더 하십시오, 그 아래까지.

○백혜련 위원 50만까지는 당연히 되는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박재호 어쨌든 찬성하는 위원도 있고 50만까지 반대하시는 위원도 계셔서 좀 더 세부적으로 자료도 받고 검토를 해 본 뒤에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일정 제17항과 1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백혜련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 잠깐만 발언할게요.

지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오늘 논의를 안 하는데요. 차관님, 보면 결국은 지금 다 타 부처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습니다.

○백혜련 위원 타 부처 의견 수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지금 자치분권위원회 중심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부처의 의견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는 내고 있고요.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고 법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올해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12월 중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게요 빨리 부처 합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안 심사를 마치고 미결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에 대해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과 보좌진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민철	김형동	박재호	백혜련
이명수	이영	이해식	이형석
최춘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고규창		
지방행정정책관	최병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